

2015.7.1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·공시

2015. 7. 1기준 개별공시지가를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(개별공시지가의 결정·공시 등)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같이 결정 · 공시합니다.

가. 조 사 대 상 : 2015.1.1 ~ 6.30까지 분할, 지목변경, 합병, 경지정리 등의 사유가 발생한 토지

나. 결정필지수 : 2,168필지

다. 결정·공시일 : 2015. 10. 30.

라. 조사기준일 : 2015. 7. 1.

마. 이 의 신 청 : 2015.7.1기준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이의신청서를 작성 ·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1) 이의신청기간 : 2015. 10. 30 ~ 11. 30.

2) 이 의 신 청 인 :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

3) 이의신청접수 : 군청 민원실 또는 토지소재지 읍면사무소

4) 이의신청처리 : 이의신청된 토지에 대하여는 결정지가의 적정성 여부 등을 재조사 및 감정평가사의 정밀검증을 거쳐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하여 그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 드립니다.

2015. 10. 30.

예 천 군

